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

작성자 : 변호사 이 찬 진

변호사 이 종 결

제1장	총 칙(제1조 - 제6조)
제2장	가정보호사건(제7조 - 제26조)
제3장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제27조 - 제37조)
제4장	벌 칙(제38조 - 제41조)
제5장	부 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법은 가정폭력의 예방, 방지에 관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구조와 치료 및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위기의 가정을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가정의 보호 및 유지 책임

- ① 국가와 국민은 건전한 가정과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상담, 폭력발생시의 피해자에 대한 피난처와 위기개입 및 지원서비스의 제공, 폭력 행위자에 대한 치료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한 가정폭력의 확대방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복지서비스 등 법적,제도적 장치의 제공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확보할 책

임을 진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 이하의 행정기관, 경찰관서에 해당 직제를 설치하고 전문공무원을 육성, 배치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 수사기관의 관련 공무원 등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시간 이상 교육 및 재교육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시 관련 민간 시설 및 법인에 예산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 3조 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족 또는 세대구성원" 간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57조 제1,2항(상해, 존속상해), 제260조 제1,2항(폭행, 존속폭행), 제271조 제1,2항(유기, 존속유기), 제273조 제1,2항(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학사), 제276조 제1,2항(체포, 감금 및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83조 제1,2항(협박, 존속협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 제321조(신체 수색), 제324조(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제350조(공갈), 제366조(손괴), 아동복지법 제18조 제2호, 제5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소정의 행위를 말한다.

2. "가족 또는 세대구성원"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가. 법률상 배우자 및 전배우자

나. 사실혼 관계 및 그 관계에 있던 자

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법률상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라. 계부, 모자, 적모, 서자 관계에 있는 자

마. 기타 동거친족을 포함하여 동일 세대 구성원 관계에 있는 자

3. "가정보호처분"이라 함은 가정폭력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 가정폭력사건에 관하여 심리, 결정하여 발부하는 폭력행위자에 대한 각종 처분을 말한다.

4.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을 말하고, "폭력행위자"라 함은 제1호 소정의 행위자를 말한다.

제 4조 가정폭력방지위원회

①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사항을 연구,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직속 하에 중앙가정폭력방지위원회를, 시·도에 지방가정폭력방지위원회를 각 두어야 한다.

② 가정폭력방지위원회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 실태 조사 및 연구
 2. 피해자의 보호 및 폭력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 사항에 대한 심의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3. 관계 기관에 대한 심의결과 제출 및 시정 요구
 4. 가정폭력실태 조사 및 심의결과에 대한 공표
- ③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은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변경시 해당 가정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중앙가정폭력방지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 각 분야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지방가정폭력방지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민간 각 분야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⑥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⑦ 기타 가정폭력방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5조 신고의무 등

- ① 가정폭력사건 발생을 인지하게 된 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호의 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가정폭력의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가 신고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등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즉시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한 교원 및 교육기관의 대표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기타 스스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치료 등을 담당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대표
- ③ 위 제1,2항에 의한 신고행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인은 여하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④ 가정폭력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은 신고인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6조 고소, 고발 등의 특례

① 이법에서 정한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또는 폭력행위자가 아닌 법정대리인은 폭력행위자를 고소, 고발할 수 있다.

②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형법 제312조, 제328조, 36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동 사건을 수사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야 한다.

제 7조 사건발생시의 응급조치

① 가정폭력사건에 관한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즉시 출동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자의 폭력행위 제지 및 증거 수집
2.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관련 보호시설에의 인도(단, 피해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
3. 피해자 긴급치료 필요시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자를 불구속 입건할 경우 사건 재발시의 가중처벌에 관한 사항의 통보, 일정기간을 정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또는 퇴거의 권고
5. 가정폭력사건 발생 보고서의 작성 및 관할 검찰에의 즉시 송부

② 전항의 가정폭력사건발생 보고서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할 사건 개요, 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인적사항, 참고인 등 증거관계, 폭력 상황에 대한 재발 가능성 여부, 사법경찰관의 동 사건에 관한 처분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8조 수사 과정에서의 긴급처분의 청구 및 발부

① 폭력행위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사건에서 수사기간 중 가정폭력행위가 재발될 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과 같은 긴급명령을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10일 이내의 2일 단위의 단계별 임시퇴거명령
2. 10일 이내의 피해자의 주거, 직장, 거리에서의 100미터 이내로의 접근금지명령

② 관할 법원은 위 각 청구된 명령에 관하여 필요시 위 기한 내에 1,2호 명령을 동시에 발부할 수 있다.

③ 폭력행위자가 1,2호처분을 위반할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10일 이하의 구속영장을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폭력행위자로부터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폭력의 피해를 받거나 재발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소명하여 위 제1항의 긴급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 제1항의 각 처분이 있을 경우 사법경찰관은 즉시 이를 폭력행위자에게 집행하고, 피해자 등에게 그 부분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9조 수사상의 특례

사법경찰관은 불구속 사건의 경우 고소, 고발 및 신고를 접수한 후 또는 담당검사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관할 검찰청에 처분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송치하여야 한다.

제 2 장 가정보호사건

제 1 절 통 칙

제 10조 가정보호사건의 범위

① 이 장에서 규율하는 가정보호사건은 다음 각호의 사건으로 한다.

1. 제 3조 제1호 소정의 가정폭력사건 중 단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를 거쳐 가정보호사건 담당 판사가 검찰송치결정을 한 사건을 제외한 사건

2.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폭력행위자를 상대로 하여 관할법원에 가정보호처분을 신청한 사건

② 제1항 제1호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 1심 법원 및 2심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해 사건에 관하여 관할법원에 가사부 송치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폭력행위자를 수사한 결과 가정보호사건으로 하기에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기소할 수 있다.

제 11조 관 할

① 가정보호사건의 관할은 폭력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 가정보호사건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가사부에 속한다.

제 12조 송 치

가정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주거, 성명, 생년월

일,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의 개요와 가정상황을 기재한 송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 13조 이 송

보호사건을 송치받은 법원은 그 사건이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 결정으로써 이를 관할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 14조 보조인의 자격과 임무

- ①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장, 피해자보호시설의 장, 관련 의료기관의 장과 교육기관의 장 및 각 그 지정을 받은 종사원과 변호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당해 사건의 폭력행위자를 제외한다.)은 피해자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보조인은 피해자가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정신지체, 기타 스스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경우 독립하여 피해자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보조인의 역할과 권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 절 조사와 심리

제15조 조사와 심리의 방침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는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성행,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 등을 규명하여야 한다.

제 16조 진술거부권의 고지

담당 판사 또는 조사관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정폭력행위자를 조사 또는 심문할 경우에는 미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 17조 조사 명령 및 촉탁

제1항 담당판사는 조사관에 대하여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 기타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제2항 피해자가 가정보호처분을 신청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필요

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30일 이내에 사건에 관한 조사를 종결하고 처분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3항 가정보호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심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복지관련 전문인 또는 관련단체에 그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제18조 전문가에 대한 의견조회

담당판사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함에 있어서 정신과의사,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기타 전문가에게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 가족 또는 세대구성원의 심리상태, 폭력의 원인 등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판사는 그 조회 결과를 심리에 참작하여야 한다.

19조 소 환

1 기록을 송치받은 담당판사는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기일을 지정하여 폭력 행위자와 피해자 및 기타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2 담당판사는 심리기일 전에 폭력행위자 및 피해자로부터 제 19조 각호 소정의 가정보호처분에 관한 의견을 포함하여 사건에 관한 처분의견을 제출받아야 한다.

제 20조 동행영장의 발부 및 집행

① 폭력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단, 사법경찰관의 조사에 불응한 폭력행위자의 경우 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담당판사는 소환없이 폭력행위자에 대한 동행영장을 발할 수 있다.

② 동행영장에는 피동행자의 성명, 연령, 주거, 행위의 개요, 인치 또는 수용할 장소, 유효기간 및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발부 연월일을 기재하고 담당판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21조 임시처분① 담당 판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

우 가정보호처분시까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폭력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임시 처분을 발부할 수 있다.

1. 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퇴거명령
2. 피해자의 주거, 직장, 거리에서의 100미터 이내로의 접근금지명령
3.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대한 임시 위탁명령
- ② 폭력행위자가 전항 12호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담당판사는 10일 이하의 감치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3. 담당판사는 제1항 각호,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가사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교도소 및 구치소 소속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4. 담당판사는 제1항, 제2항의 조치를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단, 제2항의 경우 1회, 10일 이하에 한하여 결정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 22조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

- ① 피해자는 심리에 관하여 제19조 각항 각호의 처분중 1 또는 2 이상의 처분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담당판사는 심리기간 중 피해자에게 위 각항 제19조 소정의 보호처분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 23조 심리불개시결정

1. 담당판사는 폭력행위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사건의 심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검찰에 폭력행위자에 대한 관할검찰에 지명수배를 요청하여야 한다.
2. 담당판사는 폭력행위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심리불개시의 결정을 한 경우 폭력행위자의 소재가 밝혀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심리불개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 24조 심리의 비공개

가정보호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재석을 허가할 수 있다.

제 25조 불처분 결정

- ① 담당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정을 폭력행위자와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담당판사는 제1항 전문 후단의 결정을 할 경우에 180일 이내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할 수 있다.

제 26조 위임 규정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 3절 보호처분

제 27조 보호처분의 종류

① 금지명령

금지명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접근 금지명령

폭력행위자의 6개월 이하의 기간내 피해자 거주 가택출입,동거,대면,통신 기타 이에 상당한 행위를 금하는 명령

2. 친권행사의 제한 및 친권행사자 지정명령

폭력행위자에 대한 친권 상실, 제한 및 친권행사자 지정, 후견인 지정 등 단,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자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한 양육권 금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3의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일시 양육을 위탁하는 명령과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인도명령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금전지급명령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양료 지급명령

폭력행위자가 부양의무자인 경우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상당한 범위의 부양료 지급명령

2. 손해배상 및 보상명령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 및 위자료와 피해자의 이주시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지급명령

③ 상담 및 수강 명령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기관 등에 의한 100시간 이하의 상담 및 수강에 관한 명령

④ 사회봉사명령

사회복지사업법 소정의 사회복지시설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에서 180일 이내 300시간 이하의 노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명령

5 보호관찰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관의 6월 이하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명령

6 단기 격리처분

폭력행위자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관할 교도소 및 구치소에 수감하는 처분

제 28조 보호처분의 결정

① 담당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제27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2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단, 같은 조 제3,4항의 처분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5항의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하여야 하고, 제6항의 처분의 경우에는 판결로 선고하여야 한다.

② 제27조 제2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폭력행위자에게 가납명령을 부가할 수 있다.

③ 제27조 제2항 각호의 처분은 피해자 및 그 보조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4 제27조 제6항의 처분을 할 경우 제 21조 제1항 제3호의 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가정보호사건 송치 이전의 구속 기간을 포함하여 위탁기간은 형법 제57조 제1항의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로서 이를 산입하여야 한다.

5 제25조, 제27조의 각항 및 각호의 처분을 선고받아 그 처분이 확정된 자는 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 29조 처분의 변경

1. 담당 판사는 직권 또는 가정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제 21조 제1항, 제27조 소정의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검찰, 법원으로부터 가사부송치결정을 받아 이송된 구속 폭력행위자, 가정보호사건 심리중 제21조 제1항 3호의 임시위탁명령을 받은 자, 제27조 제6항의 처분을 선고받은 자는 관할 법원에 위탁의 취소 또는 보호처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0조 결정의 집행

① 제27조 제2항에 관한 가납명령은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있다.

② 제27조 제3,4항 소정의 결정에 관하여 당해 교육기관 수탁기관 또는 복지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폭력행위자의 명령이행상황에 대하여 이를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보호관찰관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당 판사에게 명령이행상황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31조 불복

① 제21조의 임시처분에 관하여 처분의 결정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폭력행위자 및 그 대리인은 관할 법원에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의한 처분에 관하여 폭력행위자는 항고를 할 수 있다.(단 제27조 제6항의 경우에는 항소할 수 있다.)

3항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에 관하여 항고를 할 수 있다.(단, 제27조 제6항의 보호처분이 선고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항고(항소)법원의 결정에 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상고)할 수 있다.

제 32조 항고(항소)장의 제출

① 항고 또는 항소를 함에 있어서는 항소장을 원심 가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고장 또는 항소장의 제출을 받은 가사부는 3일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

고(항소)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 33조 항고(항소)의 재판

- ① 항고(항소)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판결)로써 항고(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② 항고(항소)법원은 항고(항소)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결정(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 가사부에 환송하거나 다른 가사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 34조 집행의 정지

항고(항소)는 결정(판결)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 35조 검찰송치

담당판사는 심리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가정보호처분에 적당하지 아니하여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 사건을 관할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제 3 장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제 36 조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를 받아야 한다.
- ③ 상담소의 설치기준 및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9조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가정폭력의 신고를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2.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거나 가정폭력피해시설로 인도하는 일

그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 38조 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4장 벌 칙

제 39조 사법경찰관리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5조 제4항 및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 40조 소환의 불응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 41조 폭력행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각종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42조 제5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 5장 부 칙

1. 이법은 1997. 1.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법 시행 전에 발생한 가정폭력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피해자와 독립하여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이법에 의한 사법처리절차가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하는 일
4.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사법경찰관리등으로부터 인도 받는 일
5. 가정폭력의 예방, 교육 및 홍보하는 일
6. 기타 가정폭력 행위 및 피해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는 일

제 30조 보호시설의 설치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③ 보호시설의 설치기준 및 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1조 보호시설의 업무

- ① 보호시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제 29조의 각호의 일
 2.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일
 3.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 및 사회적 자립을 도우는 일
 4. 기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 ②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 각호로 인한 전부 또는 일부의 비용을 폭력행위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 그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을 준용하고, 구상권 행사에 관한 폭력 행위자의 소득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2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

제 28조 또는 제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33조 감독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 34조 허가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 28 조 제 3항 또는 제 30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 3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한 때에 또는 조사 검사를 거부 하거나 기피한 때

제 35조 경비의 보조 등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 28조 제 1항 또는 제 3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제19조 제3항에 따른 상담료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6조 비밀엄수의 의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서 제 31조의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행하던 자가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7조 의료보호

- 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치료를 위한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또는 보건소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업무를 가 정폭력 피해자에게도 행한다.
- ② 이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독립하여 제1항의 의료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 ③ 제1, 2항의 경우 폭력행위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상할 수 있다.